

105602

국민연금공단

❖ 평가결과 요약

지표분야	지표명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전문성.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 및 성과	①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5	C
2. 내부통제기능 강화 노력 및 성과	① 사고발생 사전 방지노력과 성과 ②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노력과 성과 ③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20	B
3.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① 감사전략 및 감사계획에 기초한 감사활동의 체계적.효과적인 수행여부 ② 내부감사운영성과 측정수단과 절차 및 지적사항.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30	B
4. 경영지침준수 등에 대한 감사활동과 사후관리의 적정성	①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감사활동의 적정성 ② 보고의무 이행에 대한 적정성 ③ 사후관리노력의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및 외부회계감사인 운영의 적정성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등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조직경영성과	기관 종합평가의 결과 반영	계량.비계량	10	C
합 계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 및 성과

-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내부감사 품질평가를 통해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 내부감사 경력개발모델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상임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위탁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담당업무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선행 된 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모를 통해 감사인력을 선발하고 있으나 역량을 갖춘 감사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 감사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규모 및 필요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인력충원계획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IT를 기반으로 한 사전 예방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업무에서 전산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므로 실시 중인 IT 전문성 강화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② 상임감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상에 규정된 감사의 윤리성 등 “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상임감사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후원활동을 수행하는 등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100% 참석하고,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상임감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상 상임감사에게 요구되는 의무 및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상임감사의 노력정도가 실적보고서에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③ 상임감사가 독립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규정화하고 감사인 윤리수칙 등을 제정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 및 윤리성을 제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감사인 감사규정 개정, 윤리수칙 제정 등이 12월에 이루어져 평가를 위해 연말에 급히 규정을 보완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 앞으로는 연중내내 시스템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선하여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 감사실 직원 중 2명이 비위행위 적발직원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이는 보직순환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에서 발생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상임감사는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내부만족도 조사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여부 및 윤리성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점검 외에 독립성 체크리스트 작성, 윤리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인 자가 점검 및 상임감사의 주기적 점검 등을 도입하여 감사인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2. 내부통제기능 강화노력 및 성과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대한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2009년 평가 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가 지적되어, 2010년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신고지침을 개정하여

신고자 포상 및 신분 보호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내부신고가 2009년 1건에서 2010년 4건으로 증가하는 등 기관의 사전적 반부패 예방활동 노력이 인정된다.

- 2009년 평가 시 “노사관계 선진화 및 예산절감 등에 대한 성과사례 부족”이 지적되었으나, 2010년에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에서 노조전임자 과다운영, 노조 부당지원, 노조 가입범위 부적정,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휴가 휴일 과다 운영이 지적되는 등 방만경영에 대한 예방적 감사활동의 개선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 감사원과 주무부처 및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등 사전적 예방활동의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사고취약 및 중점관리분야의 파악을 위한 위험요인분석을 강화하여 예방적 감사활동의 체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내부감사와 구별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그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계획하고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내부통제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위험분야 및 취약분야 등을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IT기반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10년 5월 연금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기금운용 내부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해 보다 명확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출석·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이사회 참석률이 100%이고, 총 10회의 이사회 참석 중 10건의 의견을

개선하는 등 상임감사의 이사회 활동이 양호하였다. 특히, 이사회 보고 안건 47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11건에 대해서는 상임감사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경영활동에 대한 상임감사의 내부견제 및 지원의 구체적인 효과성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통제기능 강화노력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 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① 감사활동이 감사전략과 중장기 감사계획에 기초한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 감사전략과 중장기 감사계획이 감사비전, 미션 및 기관의 비전을 반영함으로써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연간 감사계획이 감사전략과 중장기 감사계획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아울러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 인력의 대규모 진출이 있어 하반기 종합감사를 보류하고, 근무기강 해이 및 업무추진동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무감찰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반기에 수행된 종합감사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보완책 없이 간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감사위험 증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감사의 목적과 업무성격에 따라 사전 일상감사,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상시모니터링, 연금 고유업무 및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감사, 직무감찰 및 내부신고 등에 의한 특정감사, 연중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감사자원이 기관에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다. 또한 관계법령 및 제 기준을 반영하여 감사규정을 개정하였고, 감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 업무처리나 근무

중 사적용무 등 위반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기 위해 복무분석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 내부감사의 활동절차 및 방법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업무분야별 위험요소 및 점검항목에 대한 감사기준(매뉴얼)이 구축되었다. 또한 감사종료 후 강평회를 시행하여 그 내용을 감사조서에 포함하여 관리하였고, 평가결과를 차기 감사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수행활동을 통하여 중요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2010년에 연금모니터링시스템,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 감사행정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감사관련 전반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년보다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감사위험 대응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내부감사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갖고 있는가?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조치요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감사전략 및 중장기 감사계획에 따른 계량적 성과지표와 비계량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내부감사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달성한 실적도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성과지표를 병렬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성과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감사종류별 활동실적이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감사를 면밀히 잘 하였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기관내에 유사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조치를 강화해야 함을 뜻하기도 하므로 유사사례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감사의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해 감사인 제척제도를 규정화하였으며, 조치요구사항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평회를 시행하는 것에 더하여 강평결과를 감사조서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감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내용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여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제반 절차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 전반적으로 내부감사운영성과는 기관이 조직 및 인력의 변동이 심한 과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전년보다 향상되었다.

③ 내부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피드백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내부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부서의 조치사항 완결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평가하는 감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완료 이행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감사보고서의 등록 및 조회를 가능케 함으로써 사후조치가 적정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감사 조치요구사항이 미집행시에 독촉서를 자동적으로 발부하여 기한내 감사조치 이행률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감사 지적사항에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 감사결과를 구성원간 공유를 위하여 감사활동에 대한 품질평가와 감사만족도 조사 및 감사 사례집과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내부감사 품질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평가를 도입하여, 2011년에 BSC(균형성과지표)기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 플리바겐 제도를 도입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처분수위를 조정함으로써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내부만족도 조사, 클린미담 게시, 감사결과 현지강평 및 컨설팅, 수범사례 선정 및 포상 등의 감사결과를 기관내에 환류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만족도 조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조사도 효과가 있겠으나 감사활동 종료 후 즉시 조사와 한해의 감사활동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이상의 결과로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4. 경영지침 준수 등에 대한 감사활동과 사후관리의 적정성

① 정부의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감사활동이 적정히 수행되고 있는가?

-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경영지침 준수를 위해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부감사 계획과 연계하여 감사활동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감사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영지침별로 점검을 하였는데, 경영지침별 점검 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영지침 이행 준수를 위하여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시행하고, 주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경영지침 이행이 일상감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 는 힘들다. 또한 경영지침 점검 체크리스트가 이행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상세한 체크리스트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감사결과 드러난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이 적절했는가?

- 감사결과 드러난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감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부보고의무 신설 및 보고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기 보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감사활동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노력이 적절했는가?

- 지적사항의 조치요구 및 미이행을 관리하고, 사후점검 및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체계를 감사행정시스템과 연금클리닉 등을 통해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 처분에 대한 이행이 33%에 불과한 것이 비록 단체협상 실효로 인해 발생할 문제지만, 외부감사 처분요구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경영지침 준수 등에 대한 감사활동과 사후관리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시전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공시지연을 방지하도록 한 전년도 평가의 지적에 대해 감사행정시스템을 통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감사실 정기 감사를 추가하였으며, 통합공시기준을 반영한 공시매뉴얼과 공시점검표를 활용하여 공시오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시항목별로 업무 담당자와 공시담당자를 분리하고 검증절차를 확대하였으며,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허위·불성실 공시 벌점제를 도입하고 감사의 확인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정기감사시 공시관련 지연, 변경, 보완 등의 지적사례가 크게 감소하여 공시정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공시종류별로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외에 공시 이후에도 공시오류 및 누락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시항목이나 내용, 정보전달채널 등에 대한 환류 수단으로서 공시만족도 조사나 정보이용 분석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공시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또한 외부회계감사인 운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청렴·윤리경영 준수도 제고 및 성과와의 연계성 제고 등 전년도 평가에서의 지적과 관련하여, 반부패청렴추진단을 구성하고 청렴옴부즈만 제도 및 청렴마일리를 도입하였으며 경영평가 및 부서장 성과계약시 청렴 관련지표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조직규모와 대민업무를 고려하여 일선부문에 청렴윤리 문화가 확산될수록 임원진과 상임감사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청렴윤리 실행력 제고를 위해 윤리경영 조직과 반부패 관련 조직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청렴윤리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윤리지수를 통해 임직원 윤리의식을 진단하고 직급별·업무별로 구분된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하였다. 다만, 부서별 자체교육과 임직원 현장교육 외에 감사실 주도의 청렴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도 직급 또는 업무의 내용을 반영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용역에서 외부감사인을 배제하고 독립성 저해요인 발생시 감사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내부감사 품질평가 및 선진화 컨설팅 관련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외부감사인과 업무협력을 강화하였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8.65점을 획득하여 평가대상 231개 기관 중 117위 기관유형별 평가대상 76개 기관 중 52위였다. 상대적으로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보다 낮았으며, 전반적인 청렴도 수준이 낮아 전사적인 청렴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는 ‘우수’ 판정을 받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